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4. 3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생산원가에 기초한 적정한 사용료 수준의 결정과 요금체계 개선을 통한 상수도 경영의 합리화 도모와 환경부 『지방상·하수도사업 추진지침』에 의한 2004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 인상

○ 싼 요금이 물 사용시 낭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물절약 의식 고취 및 생산원가 100%소비자 부담원칙에 따름

○ 옥내누수 감면제도 도입 및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하향 조정하여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

2. 주요내용

○ 상수도 사용료 사용구간 조정

일반용과 대중탕용의 사용요금 사용구간을 실제 주민들의 사용량의 분포도에 기초하여 사용빈도가 없는 구간을 배제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구간을 세분화하여 실제부과량을 기준으로 조정

○ 상수도요금을 구경별정액요금은 30%인상, 사용요금은 20% 인상

2003. 9.16~2003.10.18일 실시한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의 『상수도사업 총괄원가 산정 및 요금체계 개선용역』에 따르며, 2003년말 현재 요금실화 율이 79.3%로 2004년까지 상수도 요금을100% 현실화 하기 위하여 금번에는 현실화율 94.5%로 인상코자 함.

○ 시설분담금 30%인상

시설분담금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최초 산정액을 계속 적용하고 있으므로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시 1,666%의 인

상 요인을 가지고 있어, 전액 인상할 경우 수용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므로 소비자 물가변동 수준등을 고려하여 30%인상코자 함

○ 옥내누수 감면제도 도입 옥내 누수분에 대하여 요금을 50% 감면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 등을 사용수량으로 인정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누수량에 대한 금액의 50% 감면제도 도입으로 민원 소지 해소.

○ 상수도 가산금을 3%로 하향조정

수도요금 체납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가산금을 하향 조정

○ 상수도 과태료 현실화

상수도 관련 각종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가 현실성이 없어 위반내용에 대한 처분의 의미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태료를 개선 현실화하였음.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련자료

· 수도법 제 23조 : 붙임

·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 : 붙임

· 행정자치부 「지방상·하수도사업 추진지침」 : 붙임

나. 합　　의 :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완료

다.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4. 2. 11 ~ 3. 1 (20일간)

· 예고방법 : 성주군공보, 군청 및 읍.면게시판 게시, 군 홈페이지 게재

· 예고결과 : 의견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수도법 제17조**"를 "**수도법 제23조**" 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선납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동조제3항중 "**선납된**"을 "**납부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을 "**배관관련기능사이상(배관 기능장, 배관설비기사, 플랜트배관기능사, 건축배관설비기능사)**"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에 "**설계수수료**"를 추가한다.

제28조중"**구경별요금과**"를 "**구경별정액요금과**"로 한다.

제29조제3항중 "**2가구 이상의 가정용**"을 "**가정용**"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체납액의 100분의 5**"를 "**체납액의 100분의 3**"로 한다.

제3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하다고 인정 될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설분담금, 업종구분, 요금등의감면) 제14조, 제29조,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접수분 부터 적용한다.

③ (요금 및 가산금) 제28조, 제35조에 의한 개정 조례는 2004년 5월 납기분 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이미 고지한 요금은 종전의 요율에 의한다.

〔별표 Ⅰ〕

시 설 분 담 금

(단위 : 원)

계량기구경별	분담금액	비 고
D = 13 m/m	52,000	개조시에는 신. 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D = 20 m/m	91,000	
D = 25 m/m	143,000	
D = 32 m/m	221,000	
D = 40 m/m	312,000	
D = 50 m/m	520,000	
D = 75 m/m	1,040,000	
D = 100m/m	1,950,000	
D = 150m/m	3,900,000	

〔별표 2〕

사 용 료 요 율 표

구경별정액요금	
계량기구경 (㎜)	1전당단가 (원/월)
13	880
20	2,470
25	3,960
32	7,050
40	11,970
50	18,110
75	44,290
100	75,580
150	166,500

업종별 사용요금		
업종	사용구분 (㎥/월)	㎥당 단가 (원)
가 정 용	0 ~ 20	400
	21 ~ 30	600
	31 이상	800
일 반 용	0 ~ 50	590
	51~100	710
	101~300	1,130
	301~500	1,190
	501~이상	1,370
대중탕용	0~300	580
	301~500	700
	501~700	870
	701이상	1,280
산 업 용	단일종량제	740

〔별표 5〕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조 치
	조례 제44조 제1항 제1호	조례 제44조 제1항 제2호	조례 제44조 제1항 제3호	
1. 급수도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다만, 가정용은 2배	10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 부정급수자 및 방조자 고발
2. 무승인 급수공사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다만, 가정용은 2배	100,000원		·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단, 사후승인을 할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정공사자 및 그 방조자 고발
3. 계량기 작용방해, 훼손 무단 철거 및 망실	〃	50,000원 단, 가정용은 25,000원		· 계량기수리 및 구입 설치 명령 · 위 명령불응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 처분
4. 계량기 매몰 공작물 설치 및 봉인의 고의 파손		50,000원 단, 가정용은 25,000원		· 원상회복 명령 단,봉인 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명령불응자는 이행할때까지 정수 처분
5. 무허가 특수가압 시설 설치		50,000원		· 철거 또는 허가절차 이행 명령 · 위 명령불응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6. 사설소화전의 무단 사용 또는 봉인 파손		100,000원 단, 가정용은 50,000원		· 군수는 정하는 기간내에 과태료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7.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50,000원 단, 가정용은 25,000원		· 종전 처분에 따른 의무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할때까지 정수처분
8. 업무위반				· 업종위반 일로부터 가산하여 차액 추징 · 업종 직권변경 · 군수는 정하는 기간내에 추징금의 납부를 이행하지아니 할 때에는 이행할 때 까지 정수 처분

※ 1개의행위가 조례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위에 정한 기준중 그 벌이 중한 쪽을 적용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도법 제23조**·· ····· ····· ····· ····· ·····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 ····· ②····· ····· **납부하여야** ····· ③····· **납부된** ····· ·····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생략)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관련〔별표2〕비고1 라목에 정한 자로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①····· ····· ····· ····· 1. (현행과 같음) 2. ····· **배관관련기능사이상(배관기능장, 배관설비기사, 플랜트배관기능사, 축배관설비기능사)** ····· ·····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 ·····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 요금으로 하며, **구경별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8조(요금) ····· ····· **구경별정액요금**·····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업종의구분) ①~②(생략)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2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3(생략)	제29조(업종의구분) ①~②(현행과 같음) ③ …… **가정용** …… …… …… 1~3(현행과 같음)
제35조(가산금)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정액요금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가산금) ① …… …… …… …… **체납액의100분의 3** …… …… ……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